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6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류성걸・김상훈・윤창현

권명호 · 정희용 · 김석기

이 용・이만희・박형수

하태경 · 송언석 · 양금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 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의 증가로 과중되는 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상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 2020년 15억원이 1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요건 변경 직전해인 2017·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월 대비 4~5배가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바 있음.

이에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금액 기준에 대하여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로 정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은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1항제1호 신설).
- 나.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1항제2호 신 설).
- 다.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2항제1호 신설).
- 라.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 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제9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하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로 한다.

- 1)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이하 "주권상 장법인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4조의2(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 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주식등을 양도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하다.

-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 ②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 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 ③ 주식등의 시가총액의 계산 등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주권비상 장법인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주주(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118조의9제1항제2호 중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대주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111)) —) +)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	가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	(이하 "주권상장법인대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	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는 주식등	<u> 주식등</u>
2) 1)에 따른 <u>대주주</u> 에 해	2) <u>주권상장법인</u>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증권시장(이하 "증권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5 및 제360조의22에 따 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 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 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 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 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나	
-1.	
_	제94조의2제2항
Ċ	ll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τ	내주주(이하 "주권비상장법
<u> </u>	<u> </u>
_	
_	
_	
_	
_	
-	
-	
-	
-	
-	

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생략)

4. • 5. (생략)

② (생 략)

<신 설>

다.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의2(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1)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 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양도하는 주주 또 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 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 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국세기 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 라 한다)이 100분의 1[코스닥 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 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4] 이 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 율이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 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 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 ②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 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
 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저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 10. (생 략)
-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u>1인</u>
	③ 주식등의 시가총액의 계산
	등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주
	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가. 대주주(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대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생 략) 나. (생 략)

12. • 13. (생략)

② ~ ⑧ (생 략)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 저 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생 략)
-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것
- ②·③ (생 략)

1 = = = 17
가 양도하는 주식등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
세의무) ①
세위구) ①
1. (현행과 같음)
2
<u>대주주</u>
②·③ (현행과 같음)